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68호 2010. 2. 16(화)

포항시보

- 시장지시사항..... 2
- ◀ 조 려 ▶
-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제981호) 6
- 포항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제982호) 9
- 포항시 리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제983호) 12
-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제984호) 26
- 포항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제985호) 30
-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제986호) 33
-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제987호) 46
-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988호)..... 52
-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제989호) 58
- ◀ 입법예고 ▶
-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제2010184호) 64
- 포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제2010-202호) 76
-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제2010-215호) 84
- 포항시 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제2010-223호) 130

회 람									
--------	--	--	--	--	--	--	--	--	--

시장 지시(훈시)사항

- 2010. 2. 16(화) 간부회의 -

관 리 변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훈 시 (2. 16)	<p>○ 설 연휴 비상근무 및 제설작업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 몇 년 만에 갑작스럽게 내린 많은 눈이지만 귀성객들 불편이 없도록 제설작업 잘 해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함</p> <p>○ 직원 비상소집시 관리 및 활동에 만전 - 비상소집시 인원관리 및 점검을 철저히 하여 비상소집을 소홀히 생각하는 직원이 없도록 추진바람 - 재난의 대처상황 등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리고 신경 써서 제공하여 행정 능력대처 운운하는 비난을 받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기바람</p> <p>○ 잔설로 인해 지저분한 도로변 등 정리 및 청소 철저</p> <p>○ 수학여행단 유치 및 포항홍보 철저 - 수도권지역 수학여행 관계자들로부터 포항이 수학여행지로 좋다는 반응을 얻었음 - 지역의 지능로봇체험전시관, 해병대체험 등의 차별화된 관광상품으로 수학여행 및 관광단의 유치에 힘써주기 바람 - 우리 직원들에게 포항의 자연적·사회적 인프라가 대단함을 알게 하는 운동을 펼쳐서 직원들과 시민들이 포항의 무한한 잠재력을 알고 포항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p>	<p>전 부 서</p> <p>전 부 서 (재난안전과)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과) (홍보담당관실) (남·북구청)</p> <p>건 설 과 재난안전과 청 소 과</p> <p>관광진흥과 (자치행정과)</p>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p>훈 시 (2. 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도지역이 미관지구로 지정되는데 바다와 잘 어울리는 색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이빙대와 관련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 주기 바람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유명무실에 대한 개선책 마련하여 추진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TV설치 지역을 피해서 불법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여 활용방안 및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죽도 빗물 펌프장 공기단축에 만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구간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간부 공무원은 잦은 현장방문과 독려와 함께 공기단축 되도록 추진하기 바람 ○ 시내 곳곳의 굴곡이 심한 인도블럭을 조사 재작업하여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조치 지시 및 추진하기 바람 	<p>도시계획과 수산진흥과</p> <p>청 소 과</p> <p>하수도과</p> <p>건 설 과 남·북구청</p>
<p>지 시 10-017</p> <p>지 시 10-0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대비 매뉴얼 제작 관리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소 산불, 폭우, 폭설, 가뭄 등의 재난과 관련하여 시청·구청·읍면동별로 비상연락망·장비현황·재난상황별 주요 취약지, 인원동원, 사후관리 등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비치하여 사전대비 및 타기관, 민간지원이 빠르게 이루어져 시민들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바람 ○ 시외터미널 화장실 정비 및 철저한 관리지도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시설 설계시 견고한 자재를 사용하고, 편의시설에 대해 깨끗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시외버스 화장실에 대해 행정지도 및 행정조치를 철저히 하여 깨끗이 관리 되도록 조치할 것 	<p>재난안전과</p> <p>환경위생과</p>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지 시 10-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절한 직원(보도)에 대해 인센티브를, 잘못된 직원에 패널티를 제공 바람 - 공무원 친절과 관련 상반된 기사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잘하는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잘못된 직원에 대해 패널티를 줘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공직 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자치행정과 감사담당관실
지 시 10-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가 방영한(2.13일) 「목숨걸고 편식하다」 프로그램을 활용 대시민 캠페인 전개 및 시민들의 사고를 전환토록 하는 계획수립 및 추진하기 바람. - 15분 내외 DVD로 작업·제작하여 노인 대상으로 방영하여 고혈압 약을 끊고, 현미 채식과 자원봉사 등의 야외활동을 적극 유도하기 바람. - 현미소비를 장려하는 등의 캠페인을 펼쳐 식생활개선 운동을 통해서 시민들 건강이 확보되도록 추진 바람 	남·북구보건소
지 시 10-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칠포해수욕장 바다시청 데크 정비 및 관리 철저 	수산진흥과
개별지시 10-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후기 관인 박효수(朴孝修) 시비를 제작하여 설치하기 바람 - 동문선 5권에 실린 박효수의 시 ‘興海松羅途中觀海圖’는 670여년전 흥해, 송라 해안의 풍광을 읊고 있음. 향후사방기념공원 등에 시비제막을 통해 역사성을 부여하기 바람 	문화예술과
개별지시 10-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일운동 공적이 많으신 이주호 선생을 송라 3.1운동 기념식장에 초청 및 참여토록 조치 바람 - 1941년 비밀결사인 다혁당을 결성하여 항일운동을 펼친 ‘이주호’ 선생(1921년생, 부산거주)을 3.1운동 기념행사시에 반드시 모시도록 바람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부시장 훈시사항

- 2010. 2. 16(화) 간부회의 -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훈 시 (2.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들이 입을 조끼, 모자를 세련된 디자인으로 제작 구입하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손돕기, 주민계도 및 자연재해 지원, 각종 행사 등 활동시에 입을 조끼와 모자를 구입바라며, - 포항시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바람. ○ KTX 경주역사 준공과 관련하여 포항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TX 경주역사가 10월에 준공되면 서울에서 포항까지 2시간 거리로 가까워지니 경주역사~포항간 셔틀버스 운행 검토와 라디오, 지하철 등을 통해 수도권 지역 포항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각종 국제 행사를 대비한 손님맞이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토록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20 재무장관회의(경주), KTX 경주역사 준공, 세계 소방공무원 엑스포(대구), 한국 방문의 해 등의 행사와 관련 부서별이 아닌 관광진흥과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할 것 - 아울러 일본, 중국 관광객 유치와 관련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주기 바람 ○ 폭설, 제설작업으로 인해 손상(소파)된 아스팔트를 즉시 복구하여 주시기 바람 	<p>자치행정과</p> <p>관광진흥과 (교통행정과)</p> <p>관광진흥과 국제협력팀</p> <p>건설과 남·북구청</p>

조 례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년 2월 16일

포항시 조례 제 981 호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공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전략사업추진본부(전략경영팀, 산업단지지원팀, 미래전략산업팀)”를 “국제화전략본부(국제협력팀, 녹색성장팀)”로, “경제산업국(경제통상과, 기업노동과, 재정관리과)”을 “경제산업국(경제노동과, 기업유치과, 산업단지지원과, 재정관리과)”으로, “포항미술관”을 “시립미술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경제산업국(농축산과, 해양수산과)”을 “경제산업국(농축산과, 수산진흥과)”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환경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가목 중 “전략사업추진본부(항만정책팀, 동빈내항복원팀, 테라노바팀)”를 “국제화전략본부(해양항만팀, 동빈내항복원팀, 테라노바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p> <p>①(생략)</p> <p>②(생략)</p> <p>1. 의회운영위원회</p> <p>가. - 다.(생략)</p> <p>2. 총무경제위원회.</p> <p>가. <u>공보담당관</u>, <u>감사담당관</u>, <u>전략사업 추진본부(전략경영팀, 산업단지 지원팀, 미래산업팀)</u>, <u>자치행정국</u>, <u>경제산업국(경제통상과, 기업노동과, 재정관리과)</u>, <u>문화예술회관</u>, <u>시립도서관</u>, <u>포항미술관</u>, <u>서울사무소 소관</u>에 속하는 사항</p> <p>3. 보사산업위원회</p> <p>가.(....., <u>해양수산과</u> 주민생활지원국,.....)</p> <p>4. 건설도시위원회.....</p> <p>가. <u>전략사업추진본부(항만정책팀,,.....)</u>,......</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p> <p>①(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p>1.</p> <p>가. - 다.(현행과 같음)</p> <p>2.</p> <p>가. <u>홍보담당관</u>,, <u>국제화전략본부(국제협력팀, 녹색성장팀)</u>,, <u>경제산업국(경제노동과, 기업유치과, 산업단지지원과,,.....)</u>,.....,....., <u>시립미술관</u>,.....</p> <p>3. 보사산업위원회</p> <p>가.(....., <u>수산진흥과</u> 복지환경국,.....)</p> <p>4. 건설도시위원회</p> <p>가. <u>국제화전략본부(해양항만팀,,.....)</u>,......</p>

1. 제안이유

-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 등 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행정역량을 강화, 환동해 비즈니스 중심도시 기반조성 등을 위한 국제교류 협력 확대 및 2010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일본, 중국 등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 집중 추진.
- 저출산 및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통해 시대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조직으로 재편하는 등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구 명칭변경 및 신설·폐지 : 전략사업추진본부를 국제화전략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본부 내 국제협력팀, 녹색성장팀을 신설하고, 전략 경영팀, 미래산업팀을 폐지함. 경제산업국에 기업유치과 신설, 주민 생활지원국을 복지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신설 및 사회복지과, 평생학습과를 폐지함. (안 제3조제2항)
- 기구의 통합 및 분리 : 기업노동과와 경제통상과를 경제노동과로, 새마을봉사과와 평생학습과를 새마을평생학습과로 통합하고,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로 분리된 사항을 정리하였음.(안 제3조제2항)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0년 2월 16일

포항시 조례 제 982 호

포항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25퍼센트 이내로 지원하며 최고 8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를 “부담비율을 별표와 같이 하되, 지원액은 최고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경상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100m당 30세대 이상)상의 공급기준 미달구역(29~10세대)에 도시가스 확대 공급을 위해 시행된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사업이 2009년도에는 투자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20세대 이상만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도시가스사의 투자 하순위에 속하는 15세대 이하 지역은 현실적으로 투자순위에 배제되는 차별을 당하고 있으므로
- 조례 개정으로 신청세대수에 따른 부담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15세대 이하 지역에도 도시가스사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향후 광역시권에서 일부 시행중이거나 개정발의중인 도시가스 공급기준의 확대(30세대⇒70세대)로 예상되는 도시가스 설비 등의 시민비용 부담 증가의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도시가스 공급공사의 공급관 길이 100미터당 30세대를 기준하여 사용신청자 수가 30세대에 미달할 경우 부족한 1세대당 공급관 총공사비의 부담비율을 별표와 같이 하되 지원액은 최고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안 제6조제1항)
- 나. 중복성이 있는 제6조제2항을 삭제함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0년 2월 16일

포항시 조례 제 983 호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남구)의 대이동 란 중 5통1반을 별지와 같이 하고 6통5반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1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북구)의 중앙동 란 중 21통 1반, 22통 1반, 2반, 4반, 6반을 별지와 같이 하고 7반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23통 2반, 3반, 6반, 24통 2반, 5반을 별지와 같이 하고 6반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26통 2반, 4반, 7반, 27통 1반을 별지와 같이 하고 33통 6반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34통 7반, 35통 4반, 38통 1반, 2반, 5반, 6반, 44통 3반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북구)의 우창동 란 중 7통 6반부터 8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8통 2반부터 7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고 8반, 9반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9통 1반부터 5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고 6반, 7반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15통 6반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42통 1반부터 7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삭제하고 42통 1반부터 10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1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북구)의 장량동 란 중 39통 10반, 42통 1반 부터 7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2 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남구)의 연일읍 란 중 유강7리 2반부터 15반 까지를 별지와 같

이 하고 동문2리 23반, 유강6리 16반, 17반, 유강7리 16반 부터 20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2 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남구)의 오천읍 란 중 원2리 1반부터 11반 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고 원2리 12반부터 28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문덕2리 12반을 별지와 같이 삭제한다.

별표2 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남구)의 동해면 란 중 도구2리 1반부터 19반 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고, 도구2리 20반부터 29반까지를 삭제하고 도구1리 6반, 도구3리 1반부터 10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2 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북구)의 흥해읍 란 중 학천1리 4반, 학천3리 1반부터 6반까지, 10반부터 14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고, 학천4리 1반 부터 24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2 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북구)의 송라면 란 중 광천2리 2반, 광천3리 4반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공포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포항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중 흥해읍 학천리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명	읍 면 동	리 명	관 할 구 역
북 구	흥 해 읍	학 천 리	학천1리, 학천2리, 학천3리, 학천4리 일원

② 「포항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 및 동리장 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2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 중 흥해읍 학천리 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구 명	읍 면 명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 정 운 영 리 명
북 구	흥 해 읍	학 천 리	4	학천1리, 학천2리, 학천3리, 학천4리

【별표 1】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남구)

동 명	통 의 명 칭	반 의 명 칭	구 역
대이동	5통	1반	대잠동 235 ~ 457, 471 ~ 495, 497 ~ 568, 685
	6통	5반	대잠동 470-1 ~ 5, 470-8

【별표 1】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북구)

동 명	통 의 명 칭	반 의 명 칭	구 역
중앙동	21통	1	대신동 60의6~12, 9~11, 16~19, 81의30
중앙동	22통	1	대신동 9의5,6,8,10~12,14~16,18,24, 10의8,10~20, 23~26
		2	대신동 9의9,17, 961의1, 975의15, 976의9,17,25,60, 978의2,17~25, 979의1,3,4,6,7,11~13, 980의4,5,8
		3	현행과 같음
		4	대신동 953, 953의8,10,35, 956의11~17, 959의11~17, 960의20, 961의24, 976의7,8,42~56, 977의1,4,5,7~9, 978의8,10,11
		5	대신동 949의3,5, 950의3,5,7, 951의5,8,9,19,20, 953의5,217~224, 977의3,11
		6	대신동 9의13, 11의~17, 15의6~22, 959의26, 960의7~9,11,23,24, 961의7,19,22, 962의4,7,8, 964의22~24, 975의7,8,11, 976의1,5,27,28,37,42,43
		7	대신동 959의1, 960의14,18,19, 961의9,10,20,21, 976의10,11,16,18~20,22~24,31~33,35,40,41
	23통	1	현행과 같음
		2	대신동 78의1,2,3~18,20~28,30
		3	대신동 956의19,20,22,23,27,28,30,32~35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대신동 956의25,26,29,39~42, 953의11~33, 225~240
24통	2	대신동 75의1~9,15~17,19~24,30,32,41~43,46,50~54	
	5	대신동 66의6,8,13,17,20	

동 명	통 의 명 칭	반 의 명 칭	구 역
중앙동	26통	2	대신동 62의1~6,8,26,28~30,33,35~42
		4	대신동 62의7,13,14,21,25,27,67의1~3,11~17,19
		7	대신동 67의5,8,9
	27통	1	대신동 2의10,11, 60의18~30, 61의1,6~7,19~22
	33통	6	학산동 93의12,14, 97의3,7, 111의4~7, 112의4,13,15,16, 116의1, 119의2, 120의1, 123의1, 124의1, 126의2,7,9, 127의3,25,26, 128의3
	34통	7	학산동 127의33~72,83, 128의1,8~13, 147의8,23,24,31
	35통	4	학산동 219의6,12, 220의6,7,10,11, 221의1~19,23
	38통	1	학산동 127의15,17,19,30,32, 151의2,15,16,18,24, 152의5,8, 153의7,23,156, 168의2,6~9,15,169, 171의1
		2	학산동 92의2,3, 93의3,28,30,32~34, 127의4,14,23, 152의1~3, 153의2,3,5,14~16, 171의3
		5	학산동 154의1,156, 157의2~4, 158의2,4~7 159의1,2, 164의2, 165의2, 166의1, 170의1,2
6		학산동 161의1,162, 163의1, 164의2, 266의3,4, 267의5,268, 268의1, 269의2	
44통	3	항구동30의1,2,31,34~36, 37의6,7,38, 38의1,9~17, 55의6	
우창동	7통	6	우현 118의 6 대궁꿈마을 201~1007
		7	우현 133 영포아파트 101~506
		8	우현 133 영포아파트 107~512, 133의 4 영포주택
	8통	1	현행과 같음
		2	우현 144~330, 330의1, 331의1,5,6,8, 332의8, 333, 339의2, 340~376
		3	우현 124의1 금성굿모닝 101동 101~807
		4	우현 124의1 금성굿모닝 102동 101~1206
		5	우현 126-2 조양전원타운 101-1102호
		6	우현 126-2 조양전원타운 103-1055호
		7	우현 126-2 조양전원타운 106-1057호
		8	우현 126-2 조양전원타운 108-1059호
		9	우현 126-2 조양전원타운 110-811호
	9통	1	우현동 542 우현3차신동아파밀리에 301동 101~1701,102~2302,203~2303호
2		우현동 542 우현3차신동아파밀리에 302동 201~2201,102~2302,103~2303호	

동 명	통 의 명 칭	반 의 명 칭	구 역
우창동	9통	3	우현동 542 우현3차신동아파밀리에 303동 101~2001,102~2002호
		4	우현동 542 우현3차신동아파밀리에 303동 103~2003,205~2005호
		5	우현동 542 우현3차신동아파밀리에 304동 101~2001,102~2002,103~2003호
		6	우현동 542 우현3차신동아파밀리에 305동 101~2001,102~2302호
		7	우현동 542 우현3차신동아파밀리에 305동 203~2303,105~2305호
	15통	6	우현 539-1 우현4차신동아파밀리에 401동 101~1501, 202~1502, 103~1503, 105~1505
	42통	1	우현동 토지구획정리지구 34B1L 우현동 금호어울림 101동 101-1001호,102-1602호
		2	우현동 토지구획정리지구 34B1L 우현동 금호어울림 101동103-2003호,104-2004호
		3	우현동 토지구획정리지구 34B1L 우현동금호어울림 101동105-1705호, 106-1706호 101동 107-1107호
		4	우현동 토지구획정리지구 34B1L 우현동 금호어울림 101동 108-1108호,109-1009호
		5	우현동 토지구획정리지구 34B1L 우현동 금호어울림 102동 101-1001호,102-1602호
		6	우현동 토지구획정리지구 34B1L 우현동 금호어울림 102동 203-1703호,104-1504호 102동 205-1805호,206-1806호
		7	우현동 토지구획정리지구 34B1L 우현동 금호어울림 103동 201-1201호,102-1602호
		8	우현동 토지구획정리지구 34B1L 우현동 금호어울림 103동 103-1503호,104-1304호 103동 105-2505호,106-2506호
		9	우현동 토지구획정리지구 34B1L 우현동 금호어울림 104동 101-2501호,102-2502호
10		우현동 토지구획정리지구 34B1L 우현동 금호어울림 104동 103-2003호,104-1904호 104동 105-2005호,106-1206호	

동 명	통 의 명 칭	반 의 명 칭	구 역
장량동	39통	10	양덕 1194 ~ 1210
	42통	1	양덕동 1191-1번지 양덕하우스토리 101동 201~2502호
		2	양덕동 1191-1번지 양덕하우스토리 101동 203~2504호
		3	양덕동 1191-1번지 양덕하우스토리 102동 102~2002호
		4	양덕동 1191-1번지 양덕하우스토리 103동 201~2402호
		5	양덕동 1191-1번지 양덕하우스토리 104동 102~2003호
		6	양덕동 1191-1번지 양덕하우스토리 105동 201~2602호
		7	양덕동 1191-1번지 양덕하우스토리 105동 203~2604호

【별표 2】 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남구)

읍면동	법정 리명	행정 리명	반의 명칭	구 역	
연일읍	동문리	동문2리	23	103번지 연일베르체 201동	
				103-15번지 연일베르체 202동	
					103-16번지 연일베르체 203동
					103-19번지 연일베르체 204동
					103-18번지 연일베르체 205동
	유강리	유강6리	16	594-2번지 유강경성홈타운 301~1104호	
			17	594-2번지 유강경성홈타운 105~808호	
	유강리	유강7리	1	593-2 유강코아루1단지 101동 101~1504호	
			2	593-2 유강코아루1단지 102동 201~1502	
			3	593-2 유강코아루1단지 102동 103~1504호	
			4	593-2 유강코아루1단지 102동 105~1506호	
			5	593-2 유강코아루1단지 103동 101~1702호	
			6	593-2 유강코아루1단지 103동 103~1704호	
			7	593-2 유강코아루1단지 103동 105~1706호	
			8	593-2 유강코아루1단지 104동 101~1702호	
9			593-2 유강코아루1단지 104동 103~1704호		
10			593-5 유강코아루2단지 201동 101~1902호		
11			593-5 유강코아루2단지 201동 103~1904호		
12			593-5 유강코아루2단지 201동 105~1806호		
13			593-5 유강코아루2단지 202동 101~2202호		
14	593-5 유강코아루2단지 202동 103~2204호				
15	593-5 유강코아루2단지 203동 201~2002호				

읍면동	법정리명	행정리명	반의 명칭	구 역
연일읍	유강리	유강7리	16	593-5 유강코아루2단지 203동 103~2004호
			17	593-5 유강코아루2단지 204동 101~2002호
			18	593-5 유강코아루2단지 204동 103~2104호
			19	593-5 유강코아루2단지 205동 101~2202호
			20	593-5 유강코아루2단지 205동 103~2204호
오천읍	원리	원2리	1	302 블록 4롯데 부영사랑으로 201동 101호~1306호
			2	302 블록 4롯데 부영사랑으로 202동101호~1204호
			3	302 블록 4롯데 부영사랑으로 203동 101호~1306호
			4	302 블록 4롯데 부영사랑으로 204동 101호~1204호
			5	302 블록 4롯데 부영사랑으로 205동 101호~1204호
			6	302 블록 4롯데 부영사랑으로 206동101호~1204호
			7	302 블록 4롯데 부영사랑으로 207동 101호~1206호
			8	302 블록 4롯데 부영사랑으로 208동 101호~1206호
			9	302 블록 4롯데 부영사랑으로 209동 101호~1304호
			10	302 블록 4롯데 부영사랑으로 210동 101호~1206호
			11	356블럭 1~ 7롯데, 357블록 1~ 5롯데
			12	339블럭 1 ~ 7롯데, 340블록 1~ 13롯데, 354블럭 1~ 10롯데, 355블럭 1~ 8롯데

읍면동	법정 리명	행정 리명	반의 명칭	구 역
오천읍	원리	원2리	13	321블럭 1 ~ 8롯데, 322블럭 1 ~ 8롯데,, 323블럭 1 ~ 8롯데, 324블럭 1 ~ 9롯데 336블럭 1 ~ 10롯데.
			14	303블럭 1 ~ 6롯데, 317블럭 1 ~ 10-2롯데, 318블럭 1 ~ 9롯데, 319블럭 1 ~ 11-2롯데, 320블럭 1 ~ 7롯데
			15	304블럭 1롯데, 315블럭 1 ~ 9롯데, 316블럭 1 ~ 9롯데,
			16	325블럭 1 ~ 8롯데, 326블럭 1 ~ 9롯데
			17	334블럭 1 ~ 7롯데, 335블럭 1 ~ 4롯데, 341블럭 1 ~ 5롯데, 342블럭 1 ~ 7롯데
			18	349블럭 1 ~ 12롯데, 350블럭 1 ~ 4롯데, 351블럭 1 ~ 7롯데, 352블럭 1 ~ 6롯데
			19	360블럭 1 ~ 6롯데, 361블럭 1 ~ 11롯데.
			20	362블럭 1 ~ 3롯데, 363블럭 1롯데, 364블럭 1 ~ 5롯데, 365블럭 1 ~ 8롯데
			21	345블럭 1 ~ 3롯데, 346블럭 1 ~ 2롯데, 347블럭 1 ~ 2롯데, 348블럭 1 ~ 10롯데
			22	332블럭 1 ~ 10롯데, 333블럭 1 ~ 4롯데, 343블럭 1 ~ 4롯데, 344블럭 1 ~ 3롯데
			23	310-1블럭 1 ~ 3롯데, 330블럭 1 ~ 1롯데, 330-1블럭 1롯데, 330-2블럭 1롯데, 331블럭 1 ~ 4롯데
			24	328블럭 1 ~ 7롯데, 329블럭 1 ~ 7롯데
			25	314-1블럭 1 ~ 5롯데, 327블럭 1 ~ 8롯데
			26	305블럭 1 ~ 3롯데, 313블럭 1 ~ 8롯데, 314블럭 1 ~ 8롯데
27	306블럭 1 ~ 6롯데, 311블럭 1 ~ 3롯데, 312블럭 1 ~ 10롯데			
28	307블럭 1 ~ 4롯데, 308블럭 1 ~ 6롯데, 309블럭 1 ~ 9롯데, 309-1블럭 1 ~ 3롯데, 310블럭 1 ~ 2롯데			

읍면동	법정 리명	행정 리명	반의 명칭	구 역
동해면	도구리	도구1리	6	274, 275, 316, 425, 832-2, 846, 853, 853-4~853-40, 853-57~58, 853-69~72, 855, 855-2~4, 856, 865-12, 868, 876-1
		도구2리	1	81, 83-1, 634-2~9, 635-20, 637-2~5, 638-8, 638-14, 640-2, 641-1, 641-4, 682, 722-3~722-14, 723-1~723-12, 725-12, 727-1, 729-6, 904-6
			2	573, 576, 647-3, 647-4, 649-5, 6, 650-1~3, 651, 652-2, 3, 654~658, 662-1, 633-1~5, 667, 668-1~3, 672-1, 674~676, 694-4
			3	산91, 593-1~6, 599-1, 2, 616, 626, 629, 630-1, 632-1~8, 632-14~23, 633-5~11, 635-8, 9
			4	577-3, 582-1, 584-3, 588-1, 590-6, 592-5~14, 600-17, 601-3~10, 602-17, 602-19, 602-28, 602-30, 31, 602-35, 36, 602-42, 602-48, 602-52, 602-60, 603-2, 3, 73-5, 6, 770-9, 904-20~23, 904-29
			5	402-1, 528-4~10, 528-18, 509-7~20, 530, 536-1, 537, 582-3, 585-6, 586-1~8, 587-4, 587-5, 588-2, 602-6, 610-3
			6	60011~14, 612, - 613-1, 914-7, 700, 773-23, 773-56~59, 774, 774-20, 776, 776-2~5
			7	602-23, 협성1차 가, 나
			8	614-4, 614-22, 794, 799-1~23, 801-1, 2, 802-4, 803-4~5
			9	603-32, 협성2차 1동 101~512호
			10	603-32, 협성2차 2동 101~516호
			11	603-32, 협성2차 3동 101~505호
			12	635, 별장맨션 가동 101~505호
			13	635, 별장맨션 나동 101~512호
			14	635, 별장맨션 다동 101~512호
			15	635, 별장맨션 라동 101~510호
			16	602-221, 천호골든맨션 101~607호
			17	협성3차 1동 594, 협성3차 2,3동 101~516호

읍면동	법정 리명	행정 리명	반의 명칭	구 역
동해면	도구리	도구2리	18	별장빌라 A, B동 101~102호, 별장빌라 가, 나동 101~402호
			19	도구리빙타운 가동 101~402호, 나동 103~404호 도구리빙타운2차 가동 101~402호, 나동 103~404호
	도구3리		1	9~11, 11-4, 12-1, 12-4, 12-7, 12-21, 13-3, 70-1~2, 694-3~4, 696-1, 697-1, 697-8, 397-12~17, 699-2, 699-6, 699-8, 700, 701-2~3, 702-1, 702-3, 703-1, 703-2, 712-1, 712-2, 903-7, 903-8, 905-9, 905-10
			2	14-4~15, 15, 23-2~6, 691-2, 692-1~14, 687-3
			3	704-1~704-4, 709-1~709-10, 709-15~709-30, 710-2, 714, 717-7, 720, 720-2, 720-3, 722-15
			4	693, 청운현대맨션 101~698호
			5	689, 만서장미맨션 101~507호
			6	720-1, 이화해변타운 101~510호
			7	7, 도화아파트 101~606호, 도화상가 101~203, 도화다세대 101~302호
			8	715-4, 수정비취 101~505호
			9	691, 대우세원빌 101동 101~610호
			10	691, 대우세원빌 102동 101~610호

【별표 2】 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복구)

읍면동	법정 리명	행정 리명	반의 명칭	구 역
홍해읍	학천리	학천1리	4	336 ~ 453, 455 ~ 471
		학천3리	1	학천 456 삼도아파트 101동 101 ~ 611
			2	학천 456 삼도아파트 101동 701 ~ 1211
			3	학천 456 삼도아파트 101동 1301 ~ 2004
			4	학천 456 삼도아파트 102동 101 ~ 609
			5	학천 456 삼도아파트 102동 701 ~ 1209
			6	학천 456 삼도아파트 102동 1301 ~ 1909
			7	학천 456 삼도아파트 103동 101 ~ 508
			8	학천 456 삼도아파트 103동 601 ~ 1204
			9	학천 456 삼도아파트 103동 1205 ~ 2004
			10	학천 456 삼도아파트 104동 101 ~ 611
			11	학천 456 삼도아파트 104동 701 ~ 1211
			12	학천 456 삼도아파트 104동 1301 ~ 1906
			13	학천 456 삼도아파트 105동 101 ~ 806
			14	학천 456 삼도아파트 105동 901 ~ 1606
		학천4리	1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1동 101 ~ 1902
			2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1동 103 ~ 1904
			3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2동 101 ~ 2002
			4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2동 103 ~ 2004

읍면동	법정리명	행정리명	반의명칭	구역			
홍해읍	학천리	학천4리	5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3동 101 ~ 2002			
			6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3동 103 ~ 2004			
			7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4동 101 ~ 1302			
			8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4동 103 ~ 1304			
			9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5동 101 ~ 1302			
			10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5동 103 ~ 1304			
			11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6동 101 ~ 2002			
			12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6동 103 ~ 2004			
			13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7동 101 ~ 2002			
			14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7동 103 ~ 2004			
			15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7동 105 ~ 2006			
			16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8동 101 ~ 1902			
			17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8동 103 ~ 1904			
			18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8동 105 ~ 1906			
			19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9동 101 ~ 1902			
			20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9동 103 ~ 1904			
			21	학천 454, 삼도뷰엔빌 109동 105 ~ 1306			
			22	학천 454, 삼도뷰엔빌 110동 101 ~ 2002			
			23	학천 454, 삼도뷰엔빌 110동 103 ~ 2004			
						24	학천 454, 삼도뷰엔빌 110동 105 ~ 2006
			송라면	광천리	광천2리	2	220~241, 248~251
				광천리	광천3리	4	32-21~32-23, 32-29~32-30, 32-38~32-39, 32-42, 32-51, 42~67, 158-1, 189-1~189-88, 202~202-1, 901-13~901-14

1. 개정이유

아파트 및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로 리·통·반 구역을 합리적이고 적절한 규모로 조정하여 사회 및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효율적인 인적 관리는 물론 대민서비스 향상과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리·통/반 조정 : 9개 읍면동 2개 통·리, 69개반 증설
- 리·통/반의 조정(안 별표)

읍면동	현행		조정		증감		사유
	리·통	반	리·통	반	리·통	반	
합계	310	2,351	312	2,420	2	69	○ 증 : 통2, 리2, 반 71 ○ 감 : 통1, 리1, 반 2
읍면계	156	1,318	157	1,365	1	47	○ 증 : 리2, 반 48 ○ 감 : 리1, 반 1
연일읍	31	331	31	339	0	8	■ 연일베르체 65세대 기입주(1개반 증) ■ 유강코아루아파트 통로별 조정(5개반 증) ■ 경성홈타운 신축80세대입주(2개반 증)
오천읍	37	444	37	460	0	16	■ 원리 구획정리지구 입주세대(원룸) 증가(16개반 증)
동해면	28	143	28	142	0	Δ1	■ 도구3리 인구감소로 도구1리에 통합(1개리 감) ■ 도구2리의 인구집중 증가로 2개리로 분할(1개리 증) ■ 도구3리 2개반을 도구1리 1개반으로 편입(1개반 감)
흥해읍	60	400	61	424	1	24	■ 삼도뷰엔빌(875세대) 신축 입주(1개리, 24개반 증)
송라면	22	49	22	49	0	0	■ 반 경계 일부 조정(리·반 변동없음)
동계	154	1,033	155	1,055	1	22	○ 증 : 통2, 반 23 ○ 감 : 통1, 반 1
대이동	21	162	21	163	0	1	■ 공동주택 신축으로 5통1반 분반(1개반 증)
중앙동	50	279	50	281	0	2	■ 22통 4반 분반(1개반 증) ■ 23통 2반과 3반 통합, 6반 분반(1개반 증, 1개반 감) ■ 세대수 증가로 신설(1개반 증)
우창동	42	284	42	295	0	11	■ 과소3개통을 2개통으로 조정(1개통 감, 1개반 증) ■ 금호어울림(449세대) 입주로 1통, 10개반 증
장량동	41	308	42	316	1	8	■ 양덕하우스스토리(379세대) 입주(1통, 7개반 증) ■ 39통 상가, 주택 신축 입주(1개반 증)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0년 2월 16일

포항시 조례 제 984호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포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포항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960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집행기관의 정원 : 1,923명
-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7명

제3조(정원채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한시정원) 시에 두는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 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3조 관련)

구 분	일반직	기능직·고용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78% 이상	20% 이내	2% 이내

【비 고】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7% 이내	27.5% 이내	30% 이내	24% 이내	10.5%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 율	4% 이내	13% 이내	18% 이내	32% 이내	33% 이상

3.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 이내	97% 이상	6% 이내	94% 이내

4.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7% 이내	34% 이내	39% 이내	18% 이내	2% 이상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
총계	1,960	607	37	170	291	324	531
정무직계	1	1	-	-	-	-	-
시장	1	1	-	-	-	-	-
일반직계	1,555	486	24	97	177	268	503
2급	1	1	-	-	-	-	-
3급	-	-	-	-	-	-	-
4급	12	5	1	2	2	2	-
5급	96	32	4	4	15	12	29
6급이하계	1,446	448	19	91	160	254	474
별정직계	26	1	-	24	1	-	-
5급상당							
6급상당이하계	26	1		24	1		
연구직계	4	1	-	-	3	-	-
연구관							
연구사	4	1		-	3		
지도직계	40	-	-	40	-	-	-
지도관	3	-	-	3	-	-	-
지도사	37	-	-	37	-	-	-
기능직계	334	118	13	9	110	56	28

【별표 4】

한시정원표(제6조 관련)

기 관 별	정 원		존속기한	비 고
	계	내 역		
국제화 전략본부	1	일반직 : 4급 1	2010. 3.31	국제화 전략본부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에 의한 직급별 정원 조정을 위하여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1,960명 → 1,960명(변동없음)

나. 지방공무원 직급비율 조정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별표 2)

• 일반직공무원

- 6 급 : 27% ⇒ 27.5%(+0.5%)

- 9 급 : 11% ⇒ 10.5%(△0.5%)

• 기능직공무원

- 7 급 : 10% ⇒ 13%(+3%)

- 8 급 : 15% ⇒ 18%(+3%)

- 9 급 : 33% ⇒ 32%(△1%)

- 10급 : 38% ⇒ 33%(△5%)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0년 2월 16일

포항시 조례 제 985호

포항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 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애므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시책 등”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에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 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8월에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 포항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 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할 대상 사업의 선정은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 2.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되는 시책 등
-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시책 등
- 4.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 되는 시책 등
- 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의 기능은 포항시 주요업무 및 시민약속 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 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회 의장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시책, 제도 및 사업은 시행 적정시기에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어야 하나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실효성이 떨어지고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가 초래될 수밖에 없지만 폐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 또한 아무리 좋은 착안이나 시책이라 하더라도 비용 대 효과나 직접적 수혜자인 시민들의 체감도가 낮을 경우 과감한 폐기가 바람직하나 이 또한 결정하기가 쉽지 않음.
- 특히 예산소요가 뒤따르는 사업의 경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 등에서 그 문제점이 지적되어도 이를 제도적으로 폐기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따라서 시가 추진하는 수많은 시책과 사업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비용 대 효과를 분석하여 불필요한 낭비성 시책 등은 과감히 폐기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예산의 낭비를 줄이기 위함.

2. 주요골자

- 일몰제의 적용을 받는 “시책 등” 이라 함은 시가 정책적으로 결정 하여 집행 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으로 규정함. (안 제2조)
- 시장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8월에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 시의회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 결과에 따라 그 효과성이 현저히 떨어져 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이 있을 경우 시장에게 일몰을 권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5조)
- 일몰여부를 판단할 대상, 시책 등은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이 되는 시책,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시책,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이 되는 시책,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으로 규정함. (안 제6조)
- 일몰을 심의결정 하기 위하여 “포항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 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포항시 주요업무 및 시민약속 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심의 과정에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및 제9조)
- 시장은 일몰사업으로 선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의장의 요청이 있을시 시의회에 관련내용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10조)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년 2월 16일

포항시 조례 제 986호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례) 별표 1 제8호중 1)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제 증명 수수료 요약표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증 명>			
1. <삭제 2005.7.26>			
2. 병적에 관한 증명	1통	200	
1) 병적사항			
3. 신상에 관한 증명			
1) 삭제< '97.3.12>			
2) 부양사실증명	1통	300	
4.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1) 영업주	1통	500	
2) 중소기업자	"	500	
3) 광업·공업·상업	"	500	
4) 농가, 비농가	"	200	
5.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납세필 및 등록필	1통	300	
2) 생산실적	"	300	
3) 수출실적	"	300	
4) 납품실적	"	300	
5) 건물사용	"	300	
6) 공장 원료수입	"	300	
7) 분배농지 상환완료	"	300	
8)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	"	300	
9) 공장등록증명	1통	300	
10) 실수요자증명	"	3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1) 원자재(시설재, 공업요소) 소요량 증명			
• 가소요량	1통	3,000	
• 확정소요량	"	1,000	
12) 시설보유증명	"	300	
13) (식품환경) 영업휴가(휴·폐업) 사실증명	"	300	
14) 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 증명	"	500	
6.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 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미분배 농지	1통	300	
2) 공부외 등·초본 교부			
• 대장문서	"	300	
• 토지도면	"	300	
• 건물도면	"	300	
3) 공부 및 공부부분 열람			
• 기본료	시간당	100	
• 초과료	10분당	100	
4) 인·허가등록지정 등의 대장 열람	1건	100	
7.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 선 측량	1필지	5,000	
2)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1필지	400	
3) 삭제< '97.3.12>			
4) 환지예정지 분할	1필지	300	
5)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	"	3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6) 환지에정지 변경신청	"	300	
7) 체비지 분할 신청	"	300	
8) 토지대금 완납증명	1건	300	
9) 삭제<2006.10.4>			
10)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칼라 발급 또는 도면첨부)	1통	1,000 (1,500)	
8.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삭제			
2) 삭제<2006.10.4>			
3) 세목별납세증명서	"	800	
4) 삭제<2006.10.4>			
9.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1통	300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	"	300	
3) 원천징수 공제증명	"	300	
4)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확인원	"	300	
5) 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	"	300	
6) 보상금 지불증명	"	300	
7) 면세용도 물품증명	"	300	
10. 주택에 관한 증명			
1) 철거사실 증명	1통	300	
2) 공(시)영주택 분양금납부 증명	"	3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1. 수산에 관한 증명<신설 2000.1.31>			
1) 어업권 원부등본 교부	"	1,000	
2) 어장도 교부	"	1,000	
3) 어선원부등본 교부<신설 2005.7.26>	"	500	
12. 기타 제증명<개정 2000.1.31>			
1) 삭제<2000.1.31>			
2) 화재 증명	"	500	
3) 소방시설 완비 증명	"	500	
4) 기타 시설경비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	300	
5) 삭제<2005.7.26>			
<신 청>			
1. 일반 행정 관계			
1) 행정서사업 허가 신청	1건	1,000	
2) 행정서사 영업허가증 재교부 신청	"	500	
3)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	신규 5,000 계속 3,000	
4) 토지등급 설정심사 청구 신청	"	500	
5)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1매	50	
6) 주택임대채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신청	1건	600	
7) 삭제<2006.2.7>			
8) 기타 각종 인 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500	
2. 산림관계			
1) 입목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건	500	
2) 삭제< '97.3.12>			
3) 개간허가증 교부	1건	5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3. 농수산 관계			
1) 축사 표준설계도서 발급 신청	1매	200	
2) 삭제< '97.3.12>			
3) 삭제<2000.1.31>			
4) 삭제< '97.3.12>			
5)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 면허신청 기간의 연장신청<신설 2000.1.31>	1건	1,000	
6) 어업면허증, 면허유효기간 연장허 가 신청<신설 2000.1.31>	"	2,000	
7) 어업권 이전, 분할, 변경인가 신청 <신설 2000.1.31>	"	1,500	
8)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신고필증등 증서재교부 신청<신설 2000.1.31>	"	1,000	
9) 관리선 사용의 지정(승인) 신청 <신설 2000.1.31>	"	1,000	
10) 어업재개, 어업개시신고<신설 " >	"	500	
11) 어업허가(어선구획, 해상종묘생산) 신청<신설 " >	"	1,500	
12) 어업면허, 어업허가, 관리선지정 (승인)의 사항 변경허가 및 사용 변경 신고<신설 " >	"	1,000	
13) 어업(해면, 육상양식, 육상종묘생 산)신고, 낚시어선업, 종묘살포, 어장청소신고<신설 " >	"	1,000	
14) 수산동식물 포획, 채취해제 허가 신청<신설 2000.1.31>	"	1,000	
15) 어업허가 유예신청 <신설 2000.1.31>	1건	1,000	
16) 유해어업의 사용허가 신청 <신설 " >	"	1,5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7)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 〈신설 〃〉	〃	2,000	
18) 어업권등의 보상청구〈신설 〃〉	〃	2,000	
19) 입어, 어장구역 재결신청〈신설 〃〉	〃	2,000	
20) 어획물 운반업의 등록〈신설 〃〉	〃	2,000	
21) 어획물 운반업의 등록사항 변경 〈신설 〃〉	〃	1,000	
22) 어장안의 낚시터, 체험어장 지정 〈신설 〃〉	〃	1,000	
23) 수산물가공업 등록신청〈신설 〃〉	〃	2,000	
24) 수산물가공업 신고〈신설 〃〉	〃	1,000	
25)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신설 〃〉	〃	1,000	
4.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공장시설 등록허가 신청	1건	1,000	
2) 공업단지 지정 승인	〃	1,000	
3) 전기보안 담당자 대행승인	〃	1,000	
4)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	500	
5)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승인 신청	〃	1,000	
6)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 〈신설〉	〃	20,000	
7)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신청 〈신설〉	〃	10,000	
8)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 판매업·특수판매소)신고〈신설〉	〃	10,000	
9)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등록 신청 〈신설〉	〃	20,000	
10)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등록 신청 〈신설〉	〃	10,0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5. 건설관계			
1) 사도개설 허가 및 축조변경허가 신청	1건	500	
2) 공작물 등 설치 목적의 소하천 점용허가	1건	허가 시의 공사비의 1/1000	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
3) 토석사력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	"	점용료의 1/1000	
4) 기타 소하천의 점용(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 허가	"	점용료의 1/1000	
5) 하천 - 소하천 점용(물량증가, 명칭변경) 허가	"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6) 하천, 소하천 허가사항 변경 신고	"	500	
7) 재식 및 농업용하천(공유수면) 점용 허가	"	1,000	
8)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	1,000	
9)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척당	500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	9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	1,300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 치한 배	"	2,100	
10) 통행료(도선료)의 징수 허가신청	1건	1,000	
11) 공영주택의 양도, 양수 등 승인 신청	1 건	500	
12)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 신청	"	500	
13) 도시계획사업허가 신청	"	1,000	
14) 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서	"	500	
15)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	"	500	
16) 체비지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 변경)	" "	500	
17)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	500	초과 1매당 100원 추가
18)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	500	
19)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및 주택가 격 확인서	1필지 (1주택)	800	
20) 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기타) 단, 점용료가 300,000원 이하인 경우 건당 300원으로 한다.	1 건	점용료의 1/1000	
2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법인)<신설 2001.1.10>	1 건	30,000	
22)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개인)<신설 " >	1 건	20,000	
23)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법인)<신설 " >	1 건	10,000	
24)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개인)<신설 " >	1 건	3,0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25)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설치신고 〈신설 "〉	1 건	20,000	
6. 보건, 사회관계			
1)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 신고〈개정 2000.7.27〉	1건	40,000	
2)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 신고사 항 변경신고(명칭, 구조, 장소이전, 개설자, 관리의사 선임 등) 〈개정 2000.7.27〉	"	20,000	
3) 의료기관개설 신고필증 재교부 〈신설 2000.7.27〉	"	1,000	
4) 안경업소〈신설 2005.7.26〉			
• 개설등록 신청	"	20,000	
• 양도·양수 신고	"	10,000	
5) 치과기공소〈신설 2005.7.26〉			
• 인정 신청	"	20,000	
• 양도·양수 신고	"	10,000	
6)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 및 변경 허가 신청〈개정 2000.7.27〉	"	1,000	
7)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개정 2000.7.27〉	"	500	
8) 시체운반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개정 2000.7.27〉	"	500	
7. 문화공보관계			
1) 공연자 등록신청	"	2,000	
2) 공연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	300	
3) 공연장 설치허가			
가. 공연장	"	10,000	
나. 가설공연장	"	3,000	
다. 임시공연장	"	15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4) 공연장 증축허가			
가. 공연장	1건	5,000	
나. 가설공연장	"	1,500	
다. 임시공연장	"	150	
5) 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교부 신청	"	300	
6) 각본 등 심사신청	"	1,000	
7) 공연장 양수신고	"	500	
8) 사회단체 지부등록 신청	"	6,000	
9) 사회단체 지부등록 변경 신청	"	2,000	
10) 문화재 매매업 허가신청	"	500	
11) 출판사, 인쇄소 등록신청	"	500	
12) 출판사, 인쇄소 등록사항 변경	"	300	
13) 삭제<2001.12.24>			
14) 삭제<2001.12.24>			
15) 일반게임장업, 비디오물 시청제 공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 제공업의 등록 및 신고 <신설 2001.12.24>	"	20,000	
16) 일반게임장업, 비디오물 시청제 공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 제공업의 변경등록 및 신고 <신설 2001.12.24>	"	5,000	
17) 체육시설업 신고 <신설 2005.7.26>	"	30,000	
18)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	10,000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1】 제증명수수료요액표 (단위 : 원)				【별표 1】 제증명수수료요액표 (단위 : 원)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증명> 1. ~ 7.(생략) 8.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납세증명서 2) ~ 4)(생략) 9. (생략) <신청> 1. ~ 3. (생략) 4.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1) ~ 5) (생략)	1통	800		<증명> 1. ~ 7.(생략) 8.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삭제 2) ~ 4) 생략 9. (생략) <신청> 1. ~ 3.(생략) 4.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1) ~ 5) (생략) 6)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신청< 신설 > 7)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 > 8)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함 공유 판매업·특수 판매소)신고< * > 9)석유대체연료판매업 (주유소)등록신청< * > 10)석유대체연료판매업 (판매소)등록신청< * >				

1. 개정이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및 제33조1항」 개정(2009.1.30)과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2009.9.29)되어 일부 수수료의 기준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동 조항의 규정대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 (주유소)등록신청 수수료 : 신설 →1건당 20,000원(별표1)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 (용제판매소)등록신청 수수료 : 신설 →1건당 10,000원(별표1)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 (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신고 수수료 :
신설 →1건당 10,000원(별표 1)

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판매업 (주유소)등록신청 수수료 : 신설 →1건당 20,000원(별표 1)

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판매업 (판매소)등록신청 수수료 : 신설 →1건당 10,000원(별표 1)

바. 「지방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납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 1건당 800원 → 폐지(삭제) (별표 1)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0년 2월 16일

포항시 조례 제 987호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포항시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작은도서관” 이라 함은 공공도서관 보다는 규모가 작은 도서관으로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을 말함
- 2. “자료” 라 함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 및 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함

제3조(기능) 포항시 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 1.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4조(공간 및 위치) 작은도서관의 공간 및 위치는 다음과 같이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 1.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함
- 2. 지역의 공동시설 내에 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함

제5조(시설 및 자료)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구비하여야 함
2. 20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함
3. 기존 공용시설 중 건평 82제곱미터 이상 규모를 갖추어야 함
4. 어린이를 비롯한 전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계층을 고려한 장서들을 고루 구비하여야 함

제6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지식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 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도서관 설립 및 확대,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우선 선발한다.

1. 사서자격증 소지자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 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 소지자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도서관자원활동가 교육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

제8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은 자원봉사자를 포함 읍면 지역은 5명 이상, 동 지역은 8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최소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마을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주5일 이상 개관하여야 함
2. 운영시간은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각 작은도서관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운영자가 없는 시간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휴관) 작은도서관은 국경일과 정부 지정 공휴일은 휴관하며, 운영위원장은 독서문

회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는 한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제) 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한다.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대출) 회원에게는 도서 등 자료의 대출이 가능하며, 도서 대출의기간은 7일, 대출도서는 1회 2권 이내로 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입관의 제한) 운영자는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든 작은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작은도서관이 위치한 해당 지역의 문화계, 교육계, 자생단체, 주민자치회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 중 1명이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매달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 운영위원회를 위원장이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 5.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 6. 작은도서관 도서확보 방안에 관한사항
- 7.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설치한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도서대출회원 가입신청서

주 소			
연락처	자택전화		
	휴대폰		
이 름	생 년 월 일	초·중·고·대학생 필수 기재사항	
		학교 / 학년	부모님 휴대폰

신분증 또는 의료보험증을 제시하여 주세요.

* 유의사항

1.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즉시 알려주십시오.
2. 대출 책 수는 2권 이내입니다.
3. 대출기간은 7일간입니다.
4. 반납 연체 시 연체 일 수만큼 대출이 정지됩니다.
5. 분실 또는 훼손 시에는 현물로 변상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1. 제정이유

우리시의 작은도서관은 경북에서 가장 많은 13개소가 개관되어 시민들의 관심과 애정속에 동네속의 문화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바,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 밀착형 도서관 인프라를 조성하고 더욱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하고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작은도서관의 설치에 있어서 그 기능과 설치 공간 및 위치, 그리고 시설 및 자료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나. 작은도서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 다.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년 2월 16일

포항시 조례 제 988호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포항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 이라 함은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가공한 상품을 말함
2. “공동상표” (이하 “상표” 라 한다)라 함은 시에서 개발한 상표를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상표출원 또는 등록된 별표 1의 상표를 말함
3. “상표사용권” 이라 함은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함
4. “상표사용자” 라 함은 상표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를 말함

제3조(대상품목)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대상품목으로 별표 2와 같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상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포항시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농특산품에 전문지식이 있는 다

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포항시의회 의원
2. 농특산물 생산과 관련된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임직원(분야별)
3. 농특산물 관련 학과 교수 또는 연구원
4. 유통관련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임원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상표의 사용승인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2. 상표사용 품목의 유통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상표의 홍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상표의 운영 및 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상표 활성화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상표 심의에 경미한 사항이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는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9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상표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품질관리) 시장은 상표사용 품목의 품질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신청) 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대상자 자격, 신청절차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상표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와 관계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상표사용심사 및 사용권의 부여)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사용권을 부여하되,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상표사용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상표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는 사용권을 부여받은 품목에 한하여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상표사용 기간) 상표사용은 사용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간으로 하며, 사용기간 내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시장은 재사용 승인신청에 의해 2년 단위로 계속 연장 승인할 수 있다.

제15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상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에게 상품의 품질 상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의 품질 조사 시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상표사용자는 상품의 품질 및 유통 관리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변질·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때에는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상표사용권의 취소) ① 시장은 상표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표의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표사용 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

검출된 경우

- 2. 상표의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 3. 시장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상표사용자가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 그 밖에 상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의하여 상표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12조에 따른 상표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7조(예산지원) 시장은 농특산물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상표사용자에게 (승인받은 품목의 포장재 제작 및 홍보활동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상표법」 등을 준용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농특산물 공동상표(제2조 관련)



【별표 2】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대상품목

상 품 군	상 품 품 목
11 류	56개 품목
곡 류(2종)	쌀, 탈곡한 보리
두 류(2종)	콩, 팥
과실류(6종)	사과, 배, 포도, 감, 대추, 복숭아
서 류(2종)	감자, 고구마
야채류(15종)	고추, 무, 배추, 부추, 상치, 시금치, 오이, 토마토, 파, 호박, 마늘, 양파, 딸기, 수박, 참외
버섯류(1종)	표고버섯
화훼류(1종)	생화
가공식품류(15종)	식용참기름, 식용들기름, 식용맥아, 국수, 메주, 누룩, 고추장, 된장, 청국장, 김치, 과실분말, 과실시럽, 과실액, 인삼엑기스, 포도액
청량 및 과실음료(5종)	사과주스, 포도주스, 토마토주스, 인삼주스, 음료용 야채주스
축산물(3종)	꿀, 쇠고기, 돼지고기
수산물(4종)	꽂치, 청어, 오징어, 미역

1. 제정이유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포항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 하고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가. 공동상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대상품목에 관한 사항과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과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 나.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상표사용 승인 또는 시설유통 및 품질관리, 상표 홍보 및 육성, 상표운영 및 기준 개선, 그 밖에 상표 활성화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다. 상표사용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현지 조사 및 진위를 확인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제13조)
- 라. 상표사용권은 부여받은 날부터 2년간 유효하고 상표사용 기간 내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사용 승인하며, 상표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상태를 조사하여 사후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 제15조)
- 마. 상표 사용품목에 대해 유해성분이 허용치 이상 검출되거나, 상품 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요구 불이행, 그 밖에 상표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표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6조, 제17조)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0년 2월 16일

포항시 조례 제 989호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화장”이란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 2. “화장시설”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3. “화장장의 사용”이란 화장장에 의뢰하여 시체를 화장하거나 화장장의 부속시설을 사용함을 말한다.

제5조제1호 중 “사용실시”를 “사용일시”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용료) ① 화장장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포항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800을 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포항시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다만, 증지로 납부하기가 곤란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금으로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사망일 현재 포항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이하 “관내 거주자” 라 한다)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관내 거주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3.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시체의 접수기간) 화장할 시체는 매일 09:00부터 16:00까지 접수 하며,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전 예약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접수시간을 변경 적용할 수 있으며 전염병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급히 화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접수시간 외에라도 접수할 수 있다.

별표 1,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포항시 우현동 화장장 사용료

구 분	기 준	요 액
1. 15세 이상 일반시체	1구당	50,000원
2. 15세 미만 일반시체	"	40,000원
3. 개장유골	"	30,000원
4. 사산물	"	20,000원

2. 포항시 구룡포읍 화장장 사용료

구 분	기 준	요 액
1. 15세 이상 일반시체	1구당	40,000원
2. 15세 미만 일반시체	"	30,000원
3. 개장유골	"	20,000원
4. 사산물	"	10,000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화장 : 시체를 불에 태워서 분골로 처리함을 말한다.</p> <p>2. 화장장 : 화장장과 그 부속 시설물</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화장”이란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p> <p>2. “화장시설”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p>

현 행	개 정 안
<p><u>모두를 말한다.</u></p> <p>3. <u>화장장의 사용 : 화장장에 의뢰하여 시체를 화장하거나 화장장의 부속 시설을 사용함을 말한다.</u></p> <p>4. <u>적출물 : 적출물이라 함은 태반, 사태아, 수술부산물 등을 말한다.</u></p> <p>5. <u>개정유품 : 매장후 1년이상 경과한 유품의 경우를 말한다.</u></p> <p>제5조(사용신청) 화장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1. <u>사용일시</u> 2. ~ 3. (생략)</p> <p>제6조(사용료) ① <u>화장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포항시 우현동 화장장 사용료는 별표1, 포항시 구룡포읍 화장장 사용료는 별표2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외거주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300을 징수한다.</u></p> <p>② <u>사용료는 포항시 수입증지로 미리 징수한다.</u></p> <p>제7조(사용료의 감면) <u>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u></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p>	<p><u>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u></p> <p>3. <u>“화장장의 사용”이란 화장장에 의뢰 하여 시체를 화장하거나 화장장의 부속시설을 사용함을 말한다.</u></p> <p>4. <u><삭제></u></p> <p>5. <u><삭제></u></p> <p>제5조(사용신청)</p> <p>.....</p> <p>.....</p> <p>1. <u>사용일시</u> 2. ~ 3. (현행과 같음)</p> <p>제6조(사용료) ① <u>화장장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포항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800을 징수한다.</u></p> <p>② <u>사용료는 포항시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다만, 증지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금으로도 납부하게 할 수 있다.</u></p> <p>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u>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u></p> <p>1. <u>사망일 현재 포항시 관내에 주소를</u></p>

현 행	개 정 안																																	
<p>급자</p> <p>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시설 보호대상자</p> <p>3. 기타 시장이 사용료의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p> <p>제8조(시체의 접수기간) 화장할 시체는 매일 09:00부터 20:00까지 접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계절에 따라 접수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전염병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급히 화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접수기간 외에라도 접수한다.</p> <p>【별표1】</p> <p>1. 포항시 우현동 화장장 사용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기준</th> <th style="text-align: center;">요 액</th> </tr> </thead> <tbody> <tr> <td>15세이상의 일반시체</td> <td style="text-align: center;">1구당</td> <td style="text-align: right;">20,000원</td> </tr> <tr> <td>15세미만의 일반시체</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right;">15,000원</td> </tr> <tr> <td>개장, 유골</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right;">10,000원</td> </tr> <tr> <td>사 산 물</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right;">8,000원</td> </tr> <tr> <td>적 출 물</td> <td style="text-align: center;">1kg</td> <td style="text-align: right;">1,000원</td> </tr> </tbody> </table> <p>2. 소각장사용료 : 적출물 이외의 기타 물체(kg당 500원)</p>	구 분	기준	요 액	15세이상의 일반시체	1구당	20,000원	15세미만의 일반시체	"	15,000원	개장, 유골	"	10,000원	사 산 물	"	8,000원	적 출 물	1kg	1,000원	<p>두고 있는 자(이하 “관내 거주자”라 한다)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p> <p>2. 관내 거주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p> <p>3.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제8조(시체의 접수기간) 화장장 시체는 매일 09:00부터 16:00까지 접수하며,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전 예약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접수시간을 변경 적용할 수 있으며 전염병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급히 화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접수시간 외에라도 접수할 수 있다.</p> <p>【별표】</p> <p>1. 포항시 우현동 화장장 사용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기준</th> <th style="text-align: center;">요 액</th> </tr> </thead> <tbody> <tr> <td>15세 이상 일반시체</td> <td style="text-align: center;">1구당</td> <td style="text-align: right;">50,000원</td> </tr> <tr> <td>15세 미만 일반시체</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right;">40,000원</td> </tr> <tr> <td>개장, 유골</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right;">30,000원</td> </tr> <tr> <td>사 산 물</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right;">20,000원</td> </tr> </tbody> </table>	구 분	기준	요 액	15세 이상 일반시체	1구당	50,000원	15세 미만 일반시체	"	40,000원	개장, 유골	"	30,000원	사 산 물	"	20,000원
구 분	기준	요 액																																
15세이상의 일반시체	1구당	20,000원																																
15세미만의 일반시체	"	15,000원																																
개장, 유골	"	10,000원																																
사 산 물	"	8,000원																																
적 출 물	1kg	1,000원																																
구 분	기준	요 액																																
15세 이상 일반시체	1구당	50,000원																																
15세 미만 일반시체	"	40,000원																																
개장, 유골	"	30,000원																																
사 산 물	"	20,000원																																

현 행			개 정 안																																	
<p>【별표2】</p> <p>1. 포항시 구룡포읍 화장장 사용료</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기준</th> <th>요 액</th> </tr> </thead> <tbody> <tr> <td>15세이상의 일반시체</td> <td>1구당</td> <td>20,000원</td> </tr> <tr> <td>15세미만의 일반시체</td> <td>"</td> <td>15,000원</td> </tr> <tr> <td>개장, 유골</td> <td>"</td> <td>10,000원</td> </tr> <tr> <td>사 산 물</td> <td>"</td> <td>8,000원</td> </tr> <tr> <td>적 출 물</td> <td>1kg</td> <td>1,000원</td> </tr> </tbody> </table>	구 분	기준	요 액	15세이상의 일반시체	1구당	20,000원	15세미만의 일반시체	"	15,000원	개장, 유골	"	10,000원	사 산 물	"	8,000원	적 출 물	1kg	1,000원			<p>2. 포항시 구룡포읍 화장장 사용료</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기준</th> <th>요 액</th> </tr> </thead> <tbody> <tr> <td>15세 이상 일반시체</td> <td>1구당</td> <td>40,000원</td> </tr> <tr> <td>15세 미만 일반시체</td> <td>"</td> <td>30,000원</td> </tr> <tr> <td>개장유골</td> <td>"</td> <td>20,000원</td> </tr> <tr> <td>사 산 물</td> <td>"</td> <td>10,000원</td> </tr> </tbody> </table>	구 분	기준	요 액	15세 이상 일반시체	1구당	40,000원	15세 미만 일반시체	"	30,000원	개장유골	"	20,000원	사 산 물	"	10,000원
구 분	기준	요 액																																		
15세이상의 일반시체	1구당	20,000원																																		
15세미만의 일반시체	"	15,000원																																		
개장, 유골	"	10,000원																																		
사 산 물	"	8,000원																																		
적 출 물	1kg	1,000원																																		
구 분	기준	요 액																																		
15세 이상 일반시체	1구당	40,000원																																		
15세 미만 일반시체	"	30,000원																																		
개장유골	"	20,000원																																		
사 산 물	"	10,000원																																		

1. 개정이유

화장중심의 장사문화 시대의 도래로 화장률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1997년 3월 이후 현재까지 약 12년간 물가변동이 있었음에도 화장료 인상도 없었고 화장장 운영에 있어 매년 재정적자가 발생하여 화장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화장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용어수정(안 제2조)
- 화장장 사용료 조정(안 제6조, 별표)

· 관내거주자

(단위:원)

구 분	기 준	우현화장장		구룡포화장장	
		당 초	조 정	당 초	조 정
1. 15세 이상 일반시체	1구당	20,000	50,000	9,000	40,000
2. 15세 미만 일반시체	"	15,000	40,000	6,000	30,000
3. 개장유골	"	10,000	30,000	3,500	20,000
4. 사산물	"	8,000	20,000	2,500	10,000

· 포항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는 자

- 사용료의 100분의 300 ⇒ 사용료의 100분의800

- 화장장 이용 사전예약제 시행에 따른 시체의 접수시간 등 조정(안 제8조)

입법예고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0. 2. 10.

포항시 공고 제2010 - 184호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포항시가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임대함으로써 농가의 값비싼 농기계 구입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촌의 농업기계화를 촉진시키는 한편,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위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5조)
- 나. 농기계 임대계약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다. 임대료의 감면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 「농업·농촌기본법」 제24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3.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주소 :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16-1번지 전화 054-270-3914, FAX 054-261-1448, E-mail : nk2313@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제정조례안 1부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포항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 이라 한다)” 이라 함은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가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함
-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 라 한다)” 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대여 하는 농기계를 말함
- 3. “농기계 임대 사용료(이하 “임대료” 라 한다)” 라 함은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함
- 4. “사용자” 라 함은 시로부터 농기계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함

제4조(기능)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농기계 임대·관리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시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 및 농기계 임대장비와 부속건물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포항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요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기계 교관 또는 담당요원을 배치 운영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임대계약 및 교육) 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은 계약서상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며, 농기계의 이상유무 확인 및 점검을 한 후 출고 시켜야 한다.

제8조(임대기준 및 기간) ① 농기계의 임대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하며, 1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신청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1회(2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임대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동절기 후5시)까지로 한다.

제9조(임대료 결정 및 사전납부) ① 임대료는 농기계 구입가격, 내구연수, 농가부담정도 등을 감안하여 별표와 같이 정한다.

② 농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임대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임대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농기계 출고 전까지 임대료를 받아 잠수입 통장에 입금 후 10일 간격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거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운반이 곤란한 콩 정선기 및 구입 가격 오십만 원 이하는 무상임대)

④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0조(임대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
2. 재해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액 면제

제11조(임대료의 반환) ①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반환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사용하지 않은 일수의 임대료

제12조(임대계약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계약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임대계약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3. 농기계를 이용하여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준수사항의 이행과 농기계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의한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사고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에 대하여는 사용자 본인이 진다.

④ 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농기계의 반환) ① 농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사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이상 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제15조(임대계약의 제한) 시장은 사용자가 임대한 농기계를 사용한 후 기한 내에 입고하지 않는 등 임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다.

1. 1차 : 사용정지 3개월
2. 2차 : 사용정지 6개월

3. 3차 : 3차 위반 또는 사용자가 기계파손 후 변상조치 불이행시 영구 사용정지

제16조(비치대장) 농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 1. 농기계사용 임대차계약서(별지 제1호서식)
- 2. 농기계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 3. 임대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 4. 임대 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 5. 농기계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6호서식)
-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령 및 포항시 재무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별표]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제9조 관련)

(단위 : 원/1일)

농기계 구입금액	임 대 료	비 고
콩 정선기(고정설치), 구입가격 50만원 미만	무상	
100만원미만	5,000	
1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10,000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15,000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40,000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50,000	
3,000만원 이상 ~ 3,500만원 미만	60,000	
3,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70,000	
4,000만원 이상 ~ 4,500만원 미만	80,000	
4,5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90,000	
5,000만원 이상 ~	100,000	

※ 비고

1. 농기계 세부기종 및 내구연수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2. 같은 기종의 농기계를 추가 구입하는 경우 그 임대료는 농기계 가격의 변동에 관계없이 추가 구입 전의 기종과 같다.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사용 임대차 계약서					처리기간
					1일
임 대 인			임 차 인		
포항시장(농업기술센터소장)		주 소			
		성 명			
임대차 농기계	농기계명			수량	
	부속작업기			수량	
				수량	
				수량	
				수량	
임대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			
임 대 료		금			
농기계 사용계획	기 계 명				
	작업종류				
	작업장소				
	작업면적		ha(일 m ²)		
사용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중 보관 시는 깨끗이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 시) 3. 농기계는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대여할 수 없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5. 임차인은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6.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7.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8. 자체동력을 쓰는 기종에 한하여 임차인은 농 작업 상해공제나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증명서를 첨부한다.(엔진 및 모터부착 기종) 9. 기계 반납 시에는 깨끗이 청소 및 세척 후 반납한다.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p>「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임대 농기계를 사용 하고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위의 사용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농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함.</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임대인 : 포항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인)</p> <p style="text-align: right;">임차인 : (서명 또는 인)</p>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포항시장 **세외수입
고지서**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앞길 100번지
□□□□ -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종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수납원인과 해당금종류가 수납이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 무효증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포항시
O C R

납부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목	고지번호	순번	금
------	--------	----	----	----	------	----	---

(납부자보관용)

납부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과대상:

납부기한	과목	까지	까지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합계금액			
총체납금액			

부과내역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장 수납인

*납부장소:관내 공용기관 및 전국우체국, 전국농협

수납원의뢰서

포항시
O C R (수납은행보관용)

세외수입

납부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목	고지번호	순번	금
------	--------	----	----	----	------	----	---

납부자:

납기내금액	까지
합계금액	
납기후금액	까지
합계금액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항시장 수납인

포항시
O C R

납부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목	고지번호	금
------	--------	----	----	----	------	---

(시청보관용)

세외수입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납부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과대상:

납부기한	과목	까지	까지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합계금액			

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장 수납인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일련 번호	계 약 년월일	임 차 인		임대기계(기종 및 대수)				임대 기간	임대료 (원)	반 납 예정일	반납 확인
		성 명	주 소	기계명	대수	부 속 작업기	대수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임대료 감면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기 종 명	형 식			
	기대번호			
작업 내용				
사용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			
면제 사유				
<p>「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상기 임대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포 항 시 장 귀하</p>				
첨 부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감면 증명서류 1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p>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임대 농기계 관리대장

()월

일자	보유기종별현황											
	()			()			()			()		
	임대	회수	소계	임대	회수	소계	임대	회수	소계	임대	회수	소계
월계												
월별 누계	/	/	/	/	/	/	/	/	/	/	/	/

※ ()는 보유대수, 월별누계=전월누계+금월/전월누계임.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농기계 임대료 수납대장

일련 번호	년월일	농기계임대농가		임대기종		임대 기간	임작업 면적 (㎡)	임대료 (원)	수 납 확인자	소계 (원)	비 고
		성 명	주 소	기종명	수량						

※ 임차인은 임대료 수납확인필증을 반드시 각각 보관한다.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포항시 공고 제2010 - 202호

「포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년 2월 12일

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569호, 2009. 4. 1. 공포, 2009. 7. 2. 시행)되어 현 조례의 상당부분이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로명 주소의 적용범위 규정(안 제2조)
- 나.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안 제3조, 제4조)
- 다.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안 제7조, 제8조)
- 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이용한 광고의 범위(안 제11조)
- 마.. 포항시도로명주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3. 관련법령

- 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나.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및 「도로명주소대장규칙」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7일까지 포항시장(참조 도시계획과)에게 의견서를 서면, 전화 또는 팩스, PC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장소 : 포항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장)

라. 기타 참고사항

- 주 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1001)
- 전 화 : (054)270-3492, 3493
- 팩 스 : (054)270-3470
- E-mail : ideman@korea.kr

붙 임 : 포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등

제3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규칙으로 정하여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비용으로 변경)를 기준으로 한다.

③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징수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수입증지로 한다.

제4조(원인자 부담)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 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시의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세입·세출외 현금 규정에 의하여 관리 집행한다.

제3장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제5조(도로명의 사용의무) 시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법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의하여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 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 ① 시의 도로·건축물·국토이용계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 주소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

제7조(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안내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이 조례 제9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설치하도록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훼손·망실된 도로명주소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공제 가입을 할 수 있다.

제8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시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 1. 「지방공기업법」 상의 지방공사·공단
- 2. 최근 2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 도로표지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도로명주소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 2. 계약기간 및 금액
- 3. 도로명주소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 4. 도로명주소시설 일제조사 계획
- 5. 도로명주소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 6. 도로명주소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9조(도로명주소시설의 점검)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 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의 이상 유

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도로명주소시설이 훼손·망실되었거나 훼손·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가 도로명주소시설을 성실히 유지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5장 도로명주소시설을 이용한 광고

제11조(광고의 범위)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할 수 있다.

제12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광고사업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모집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설치된 도로명 주소안내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시장과 협의·확정하여야 한다.

제13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광고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6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제14조(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 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도로명 주소에 대한 교육이 실시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해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도로명주소 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 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

- 2.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 방식 도입
-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
- 4. 그 밖에 시장이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7장 포항시도로명주소위원회 등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포항시도로명 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 1.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 2. 도로명주소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 3. 포항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③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이 시작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21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는 사항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명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포항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0. 2. .

포항시 공고 제2010 - 215 호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같은 법 시행규칙, 「농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등의 개정 및 「수질환경보전법」의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 하고자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 중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 시 까지 유예된 일부 용도지역 내 공장입지 허용, 건폐율 완화, 용도변경 특례에 대하여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완화하고자 함
-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허가기간의 연장 또는 허가 취소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53조, 제84조, 제93조, 제111조, 제112조 및 별표2부터 별표23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한 일부 개정(안 13조, 25조, 43조의2, 44조, 46조, 48조, 부칙8조, 별표1부터 별표25까지)
- 나. 「농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 환경보전법」,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개정으로 인한 일부 개정(안 제25조, 별표1, 별표4, 별표16, 별표19)
- 다. 「수질환경보전법」을 폐지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인한 일부 개정(별표4, 별표16, 별표19)

라.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허가기간의 연장 또는 허가 취소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안 제19조의2)

3.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농지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건축법」
-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3.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장,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앞길 100번지, 전화 270-3467, FAX 270-3470, E-mail : sansam251@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제3호” 를 “제4호” 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조의2(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 136조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 부터 1년 이내

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중단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을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다)

2.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을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다)

제25조제4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로 하고 “제4항” 을 “제6항” 으로 하며, 제4항, 제5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 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⑤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 되었다고 인정되어 가결된 경우에 한한다) : 50퍼센트 이하

⑦ 영 제84조제7항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에 의한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할 경우에는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규칙 제12조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별표25와 같다.

제46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를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각 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를 “전체위원의 3분의2” 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출석으로” 를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46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로 한다.

부칙 제8조제1항 중 “별표 26” 을 “별표 18”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40퍼센트 및 80퍼센트” 를 “20퍼센트 및 80퍼센트” 로 한다.

별표1부터 별표23까지 및 별표 2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제16조관련)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 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 (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1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49조제1항에 의한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별표 2】 <개정 2007.1.16>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호관련)

-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개정 2007.1.16>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2호관련)

-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4】〈개정 2007.1.16, 2008.8.19, 2009.5.19〉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3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 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을 제외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타미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규제법」 제7조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개정 2007.1.16, 2008.8.19, 2009.5.19〉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4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 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을 제외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자.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

전. 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개정 2007.1.16, 2008.8.19〉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5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며, 관람장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 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을 제외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 자. 별표 4 제2호차목의 공장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7】 <개정 2007.1.16, 2008.8.19, 2009.5.19>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6호관련)

-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대규모점포는 제외하고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마. <삭제2008.8.19>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 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8】〈개정 2007.1.16, 2008.8.19〉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7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 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라목의 국방·군사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인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 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같은 호 라목의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9】〈개정 2007.1.16, 2008.8.19〉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8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라목의 국방·군사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학교를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 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같은 호 라목의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10】〈개정 2007.1.16, 2008.8.1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9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탁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 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세차장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1】〈개정 2007.1.16, 2008.8.19〉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0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라. 〈삭제 2008.8.19〉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 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2】〈개정 2007.1.16, 2008.8.19〉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1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나목·차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나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소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3】 <개정 2007.1.16, 2008.8.19>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2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미술소를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4】 <개정 2007.1.16, 2008.8.19, 2009.5.19>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3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다만,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시장이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지역에 한하며, 기숙사를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제1호라목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대규모 점포는 제외하고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

확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5】〈개정 2007.1.16, 2008.8.19〉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4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6】 <개정 2007.1.16, 2008.8.19>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5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 학교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일반 음식점은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며,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 생산품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 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7】 <개정 2004.7.27, 2007.1.16, 2008.8.19>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6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 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 하는 것에 한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당해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단, 기존 허가 부지면적과 건축연면적 이하에 의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라목의 집배송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8】〈개정 2007.1.16, 2008.8.19〉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7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사. 〈삭제 2008. 4. 8〉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9】 <개정 2007.1.16, 2008.8.19>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8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0】 <개정 2004.7.27, 2007.1.16, 2008.8.19, 2009.5.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9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제2호자목(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 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 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신설 2008.4.8>
 - (1) 별표19 제2호 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 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한다.
 -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것
 -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 하는 것
 -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 (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서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개정 2008.4.8>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개정 2008.4.8>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8.4.8>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개정 2008.4.8>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개정 2008.4.8>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개정 2008.4.8>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8.4.8>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별표 25에서 규정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 음식점 및 제과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시장이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별표 19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 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

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단, 기존 허가 부지면적과 건축연면적 이하에 의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같은 호 가목의 창고 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21】 <개정 2007.1.16, 2008.8.19>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20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 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같은 호 나목, 다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나외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신설 2008.4.8>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사외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단, 농업용 시설에 한한다)<신설 2008.4.8>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2】 <개정 2007.1.16>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21호관련)

-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 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국도·지방도·국가하천·지방하천·도시공원·자연공원과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바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같은 호 가목에 대하여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 시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신설 2008.4.8>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개정 2008.4.8>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8.4.8>

【별표 23】 <개정 2007.1.16>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 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별표 25】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제44조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다.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 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바.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사.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1급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 아.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 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주 : 1) “집수구역”이라 함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 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라 함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잦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라 함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p>1. (생략)</p> <p>2.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3. (생략)</p>	<p>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p> <p>4. (현행과 같음)</p>
<p>제19조의2(개발행위허가의 취소)</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19조의2(개발행위허가의 취소)</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6조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p> <p>1. 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 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중단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을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다)</p> <p>2.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p>

현 행	개 정
<p>제2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p> <p>① ~ ③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④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u>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u>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p>	<p>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 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받은 자가 <u>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을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다)</u></p> <p>제2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의하여 <u>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u></p> <p>⑤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의하여 <u>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 되었다고 인정 되어 가결된 경우에 한한다) : 50퍼센트 이하</u></p> <p>⑥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u>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u>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p>

현 행	개 정
<p>센트 이하로 한다. <u>〈신 설〉</u></p> <p>제43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u>〈신 설〉</u></p> <p>제44조(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단, 주거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에 한한다)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별표25와 같다.</p> <p>제46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u>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③ (생략)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p>	<p>하로 한다.) <u>⑦ 영 제84조제7항에 의하여 자연녹지 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제43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u>영 제93조제2항에 의한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할 경우에는 기존업종보다 오염 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u></p> <p>제44조(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규칙 제12조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u>별표25와 같다.</u></p> <p>제46조(구성 및 운영) ① <u>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u> 이내의.....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u>각 호의 어느 하나</u>에..... </p>

현 행	개 정
<p>하는 위원회 수는 <u>위원 총수의 50퍼센트</u> 이상이어야 한다.</p> <p>1. ~ 3. (생략)</p> <p>⑤ (생략)</p>	<p>..... <u>전체위원의 3분의 2</u></p> <p>1. ~ 3.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제48조(회의 운영) 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u>출석으로</u>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생략)</p>	<p>제48조(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u>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46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u></p> <p>③ (현행과 같음)</p>
<p>부칙 제8조(관리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p> <p>①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u>별표 26</u>의 규정에 의한다.</p> <p>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u>40퍼센트 및 80퍼센트</u> 이하로 한다.</p> <p>③ (생략)</p>	<p>부칙 제8조(관리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p> <p>①</p> <p>..... <u>별표 18</u>.....</p> <p>②</p> <p>..... <u>20퍼센트 및 80퍼센트</u></p> <p>.....</p> <p>③ (현행과 같음)</p>

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0년 2월 17일

포항시 공고 제2010 - 223호

포항시 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포항시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인 주택전세자금 및 주택구입자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환경미화원 들의 사기를 진작 시키고 맡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포항시 환경미화원에 대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인 자금별 대부금액은 주택전세자금은 2천만원 이하로 하고 주택구입자금은 3천만원 이하로 한다

3. 관련법령

「포항시 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청소과장, 주소 :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번지, 전화 : 054-270-3151 , 팩스 : 054-270-3160, E-mail : yjp904@pohang.org)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포항시 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부

포항시 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포항시 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대부금액)조례 제14조에 의한 자금별 대부금액은 주택전세자금 **2천만원** 이하로 하고, 주택구입자금은 **3천만원** 이하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4조(대부금액)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별 대부금액은 주택전세자금은 1천만원 이하로 하고, 주택구입자금은 1천5백만원 이하로 한다.</u></p>	<p><u>제4조(대부금액)조례 제14조에 의한 자금별 대부금액은 주택전세자금은 2천만원 이하로 하고, 주택구입자금은 3천만원 이하로 한다.</u></p>